

2024년 여성가족 정책 모음.zip “이렇게 달라집니다”

대전시 및 정부 부처는 매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,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 이번 호에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여성·가족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2024년 달라지는 대전의 여성·가족 제도

대전시에서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여성·가족 관련 4가지 주요 제도를 공유합니다. 보다 상세한 다른 제도는 『2024년 달라지는 대전생활』^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시행 예정인 사안 중 변동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,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시행 담당 부서로 문의 바람

신설

01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

- **대상** | 대전시 거주,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한부모가족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
 - 첫째 기준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(단, 첫째가 12세 초과 시에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)
 -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
- **지원내용** | 청소·세탁 등 가사서비스 업체 이용 요금 지원
 - 가구당 주 1회, 월 최대 4회 이용 요금 지원(회당 4만원 / 초과 금액 본인 부담)
- **신청방법** | 대전광역시가족센터 홈페이지(daejeon.familynet.or.kr)

02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

종전	변경
출산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	출산 태아 1인당 120만 원 지원

- **대상** |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*
*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한 자
- **신청방법** | 정부 3.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
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

종전		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대전시 난임부부 · 연령별 차등 지원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적용대상(여성)</th> <th>44세 이하</th> <th>44세 초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체외수정</td> <td>신선</td> <td>1-9회</td> <td>110</td> </tr> <tr> <td>동결</td> <td>1-7회</td> <td>5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인공수정</td> <td>1-5회</td> <td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적용대상(여성)		44세 이하	44세 초과	체외수정	신선	1-9회	110	동결	1-7회	50	인공수정		1-5회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대전시 난임부부 •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적용대상(여성)</th> <th>1회당 최대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체외수정</td> <td>신선</td> <td>1-9회</td> </tr> <tr> <td>동결</td> <td>1-7회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인공수정</td> <td>1-5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적용대상(여성)		1회당 최대지원금	체외수정	신선	1-9회	동결	1-7회	인공수정		1-5회
적용대상(여성)		44세 이하	44세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	
체외수정	신선	1-9회	110																										
	동결	1-7회	50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공수정		1-5회	30																										
적용대상(여성)		1회당 최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체외수정	신선	1-9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동결	1-7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공수정		1-5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**지원내용** |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현금지원 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 포함)
- **신청방법** |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

0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

종전	변경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 받은 자	소득기준 폐지 ,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 받은 자

- **지원내용** |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현금지원 (최대 300만 원, 진료비의 90%까지 지원)
- **신청방법** |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

① 대전시 홈페이지(www.daejeon.go.kr)에서 열람 가능

**2024년 달라지는
정부의 여성·가족 제도**

정부가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인 345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15가지의 여성·가족 관련 일부 내용을 담았습니다. 보다 상세한 다른 부처·분야별 주요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『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』^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설

01

**혼인·출산에 따른
증여재산 공제**

- **증여자** | 직계존속
- **공제한도** | 1억 원(단,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 적용,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)
- **증여일** · 혼인신고일 이전 2년-이후 2년(총 4년)
 - 자녀의 출생일(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)부터 2년
-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-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·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

02

**워라밸 일자리 장려금
(실근로시간 단축제) 시행**

- **대상** | 주 평균 2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
- **지원요건** |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후,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2시간 이상* 실근로시간 감소한 경우
 - * (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) - (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)
- **지원기간 및 주기** |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, 3개월 단위
- **지원금액** |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
 -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% 지원(최대 100명)

03

**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
임차비 지원**

- **대상** |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- **지원기준** |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%(임차 보증금 제외)

04

**돌봄서비스 특화훈련
실시**

- **주요내용** | 당초 일반직종 훈련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돌봄분야 훈련을 내일배움카드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통합 지원
- **지원 훈련과정** | 요양보호사 양성과정,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
- **지원방식** | (선 부담 훈련비 환급)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,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,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

05

**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
추적 장치 부착**

- **주요내용** (스토킹행위자 체제 강화)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(피해자 보호 강화)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

②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와 ‘이렇게 달라집니다’ 홈페이지 (whatsnew.moef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함



06
첫만남이용권 바우처
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

- 대상 |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신청권자 |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- 지원방식 |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지급)
- 사용처 | 유흥업소·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
- 사용기한 |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

종전

-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

변경

- 첫째아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 **300만 원**

07
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

- 대상 | 0-1세 아동('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
- 지원방식 | 현금 또는 바우처
 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,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
 -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정부지원금으로 지원
 -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
- 신청방법 |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종전

- 0세 월 70만 원
- 1세 월 35만 원

변경

- 0세 월 **100만 원**
- 1세 월 **50만 원**

08
아이돌봄 서비스
정부지원 확대

종전

지원 비율	소득기준 (중위소득)	정부지원비율	
		0-5세	6-12세
	75% 이하	85%	75%
	120% 이하	60%	20%
	150% 이하	15%	15%

변경

소득기준 (중위소득)	정부지원비율		
	1자녀		2자녀
	0-5세	6-12세	
75% 이하	85%	75%	본인 부담금 10% 추가 지원
120% 이하	60%	30%	
150% 이하	20%	15%	

- **신설** 중위소득 150% 이하 청소년(한)부모 가구 1세 이하 아동 양육 시,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의 90% 지원

09
자녀장려금 대상 및
지급액 확대

종전

소득기준 •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인 홀벌이·맞벌이 가구

지급액 •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
변경

- 총소득 **7,000만 원** 미만인 홀벌이·맞벌이 가구
- 자녀 1인당 최대 **100만 원**

10
'6+6 부모육아휴직제'
시행

종전

-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(통상임금 100%) 지원
-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
 - (1개월) 200, (2개월) 250, (3개월) 300

변경

- **자녀 생후 18개월 내**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**부모 각각 6개월간** 육아휴직급여를 **최대 월 450만 원**(통상임금 100%) 지원
-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
 - (1개월) 200, (2개월) 250, (3개월) 300, **(4개월) 350, (5개월) 400, (6개월) 450**

11 민간가정 어린이집 ‘영아반 인센티브’ 도입

• 주요내용 | 민간가정 어린이집 0-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% 이상일 경우,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

종전

- 현원 아동당 지원
- 예) 0세반 2명 재원 시
 - 부모보육료 2명분+기관보육료 2명분 지원



변경

- 현원 아동당 지원+**영아반 인센티브** 도입
- 예) 0세반 2명 재원 시
 - 부모보육료 2명분+기관보육료 2명분 지원
 - +**인센티브(기관보육료) 1명분**

1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

①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

종전

소득기준	• 중위소득 60% 이하
자녀연령	• 만 18세 미만 자녀
지원금액	• 월 20만 원



변경

- 중위소득 **63%** 이하
- **고등학교 재학** 중인 자녀
- 월 **21만 원**

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종전

지원금액	• 월 35만 원
------	-----------



변경

자녀 연령	지원 금액
0-1세	40만 원
2세 이상	35만 원

1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

종전

소득기준	• 중위소득 60% 이하
지원금액	• 월 20만 원



변경

- 중위소득 **63%** 이하
- 월 **25만 원**

14 스톡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사업 전국 확대

• 주요내용 | 스톡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까지 개별 거주시설(원룸, 오피스텔 등) 제공

종전

-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(6개 시도)
 - 서울, 부산, 인천, 충남, 전남, 경남



변경

- 전국 **17개 시도** 확대
-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 장비 구축

15 가정폭력 보호시설 (이주여성 포함)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

종전

-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00만 원



변경

-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00만 원
- **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**

